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3.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9월 23일, 송언석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9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2. 4. 2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3. 2. 9.)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3. 2. 15.)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조용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는 활동을 통해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2021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업무담당자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행정, 통신 등 비전문 직렬이며,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 수행의 전문성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존재함.

특히, 2018년 시행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 사망자 감축) 일환으로 전문조직이 신설(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되었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및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교통안전 전문교육 의무화를 통해 전문성 한계를 해소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23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용훈)

가. 교통안전 담당자에 대한 전문교육 의무화(안 23조의2 신설)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 ①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국토교통부 의견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업무 담당자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검토의견

교통안전 부문의 직무 전문성 확보는 국민의 안전 및 생명보호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순환보직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은 교통안전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¹⁾ 및 교통행정기관(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²⁾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부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분산하여 시행되고 있는

1)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에 의하여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지정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것으로 파악됨.³⁾ 그런데, 최근 5개년(2017년 ~ 2021년) 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교통안전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인원은 매년 약 50인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에 특화된 체계적인 직무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직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은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에 소속된 공무원과 직원을 아우르는 전국단위의 법정 의무교육을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므로, 교육대상 기관 및 교육대상자 범위, 교육기관의 선정 등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 정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안전 분야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의무화하는 입법례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⁴⁾에 따른

3) “교통안전 신사업 발굴 기획연구”, 한국교통안전공단, 2021.12. p.54~63

교통안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기관별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국토교통 분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기준 교통 및 도로정책, 철도 및 항공안전 등을 포함한 10개의 교통 관련 집합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음.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교통안전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교통안전관리과정(8시간)’이 이러닝(비대면 비실시간)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21년도 수료 인원은 1,067명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5일, 35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교육인원은 50인 내외임. 그 밖에, 일부 시·도 지방교통연구원(전북·경남·경북)에서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북교통문화연구원의 경우 도내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통전문교육과정(3일, 21시간)을 운영중이며, 연간 교육 인원은 480명 내외임.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이 있으며, 동 교육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⁵⁾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 대상기관을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⁶⁾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그 범주가 명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적용대상이 되는 대강의 범주를 법률에서 규정하되,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도록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교통사업자”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운행·운항·설치·관리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철도사업자, 항공운송사업자, 해운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교통수단운영자”라 한다)

나. 교통시설을 설치·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이하 “교통시설설치·관리자”라 한다)

다. 교통수단운영자 및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외에 교통수단 제조사업자,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 등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와 관련된 영리적·비영리적 활동을 수행하는 자

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 기관 및 교육 대상자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⁷⁾에 소속된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와 「도로법」 제77조⁸⁾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 등에서 과적 차량의 운행제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개정안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 수요 추정(국토교통부 제시) 】

구 분	국토부	지자체	공사/공단	단속원	소 계
인원(명)	216	12,185	688	2,231	15,320

국토부: 본부(도로국) 및 지방청(운영지원과 등 지원부서 제외)

지자체: 도로·교통 관련 부서

공사/공단: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도로·교통 담당부서

단속원: 「도로법」 제77조 등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국토교통부’ 소속 또는 산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및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주된 교육대상인 것으로 보임.

7) 「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교통관련 교육·연구·조사기관에 해당함.

8)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 ⑧ (생 략)

그런데, 현행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⁹⁾은 도로·철도 등 육상교통뿐만 아니라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을 포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외에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이 현행 제2조제5호¹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¹¹⁾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으로서 소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교육대상 기관 및 교육대상자 범위를 국토교통부 소속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로·교통 분야 담당자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도로법」 제77조 등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¹²⁾은 도로관리청 등

9)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교통시설안전진단”이란 육상교통·해상교통 또는 항공교통의 안전(이하 “교통안전”이라 한다)과 관련된 조사·측정·평가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시설에 대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0) 「교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정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의 운행·운항·설치 또는 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행하거나 관련 법령·제도를 관장하는 「정부조직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11)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조(지정행정기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지정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법무부
4. 행정안전부
5.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부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 8의2. 환경부
9. 고용노동부
10. 여성가족부
11. 국토교통부
12. 해양수산부
13. 경찰청

14. 국무총리가 교통안전정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에서 과적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 및 교통안전장치(운행기록장치, 차로이탈경고장치,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여부 등 교통안전 관련 단속업무¹³⁾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교통안전 전문교육 대상에 포함하려는 취지로 보임.¹⁴⁾

12)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은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하며, 도로법 제77조의 과적 차량 운행제한 업무 외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 및 「교통안전법」 제55조의3에서 운행제한단속원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및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두고 있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의 안전 유지 및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0항 또는 제1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2. 제11조제23항 또는 제12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였는지 여부

② ~ ④ (생략)

「교통안전법」

제55조의3(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2. 제55조의2를 위반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였는지 여부

②·③ (생략)

13) 「도로법」 제109조 등에서는 운행제한단속원이 과적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 등 조사 권한을 근거법령에서 부여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음.

「도로법」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14) 「도로법」 제7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제한단속원 외 자동차안전단속원의 경우 자동차검사·정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동차검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가 수행하고 있는데 반하여, 운행제한단속원의 경우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5833호) 검토보고서, 2021.2, 국토교통위원회).

다만, 운행제한단속원 중 도로관리청 등이 직접 고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직원의 경우 개정안의 교육대상인 ‘공무원 및 직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경우 개정안의 의무교육 대상에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을 포함’하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 중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에 소속되어交通安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은 현행 제54조의2¹⁵⁾에 따라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이 지정한交通安全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일부 중복의 소지가 있고, 유사한 용어의 사용으로 법 적용에 혼선이 우려되므로 개정안의交通安全 전문교육 대상자에서 현행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交通安全담당자는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현행 제54조의2에서는 대통령령¹⁶⁾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

15) 「교통안전법」

제54조의2(交通安全담당자의 지정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交通安全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라交通安全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交通安全담당자로 하여금交通安全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交通安全담당자의 직무, 지정 방법 및交通安全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交通安全담당자의 지정)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交通安全담당자(이하 “交通安全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의 범위와 그 지정 인원은 별표 8의2와 같다.

② 법 제5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

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는 현행 제53조17)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18)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2022년 1월 현재 한국도로공사 등 54개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20대 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 2,200여 개 교통수단운영자가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소속의 교통안전담당자는 현행 제53조에 따른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외에 개정안에 따른 교통안전 업무 담당자 교육을 중복하여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참고1: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및 교통수단운영자 현황, 참고2: 교통안전담당자 교육 현황).

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2.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사고 원인의 조사·분석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 또는 지정해지 하거나 교통안전담당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알리고, 지정해지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17) 「교통안전법」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항행 또는 교통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점검·관리하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18)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4조의3(교통안전담당자에 대한 교육) ①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신규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2. 보수교육: 교통안전담당자의 직무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16시간으로, 보수교육은 회당 8시간으로 한다.
-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연도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계획을 수립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12월 31일까지 교통시설설치·관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전년도 교육인원 등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교육 과목·내용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해서 공고해야 한다.

【 개정안과 현행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비교 】

구 분	개정안(안 제23조의2)	제5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교육대상 및 규모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소속 직원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소속 교통안전담당자 소속 교통수단운영자 소속 교통안전담당자
	약 1.5만 명 내외로 추정		약 50여명 약 2,200여명
교육대상 중복여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소속의 교통안전담당자(약 50여명) 중복		

자료: 국토교통부

셋째, 개정안은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면서 해당 교육을 직접 시행할 교육기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한다는 계획임.

현행 제59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전문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제59조제3항을 근거로 대통령령¹⁹⁾에서 규정할 수 있을

19) 「교통안전법」

제5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정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 교통행정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과 관련된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교육 대상자 규모가 약 1.5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고,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교육훈련기관인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및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 등 기관에서도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른 전국 단위의 법정 의무 교육을 단일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내실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 선정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문인력, 시설기준 등 교육기관의 요건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하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
2. 법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우수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3.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4.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자격증명서의 발급
- ② 교통행정기관의 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와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시·도지사등의 업무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규정의 접수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평가
2.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관리
3. 삭제 <2017.9.19>
4. 운행기록등(자동차의 운행기록등만 해당한다)의 제출 요청 및 점검·분석
5.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의 설치·운영
6. 교통문화지수의 개발·조사·작성 및 결과의 공표
7.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교통체계 개선권고와 그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이행계획서의 접수와 그 이행의 확인·점검 및 이행결과보고서의 접수
- ③·④ (생략)

로 보임.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²⁰⁾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의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교육대상자가 연간 2.2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²¹⁾에 따라 54개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행기관²²⁾을 통해 분산하여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넷째,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 등’이 소속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해당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 제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데, 개정안에 따른 의무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 및 제재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22) 중앙부처 소속 및 공공 교육기관 28개,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16개, 민간 교육기관 10개 (“2022년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2022.1)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현행 제65조제2항제9의3호²³⁾에 따르면,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3항²⁴⁾에서는 재난안전책임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직접 전문교육 이수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²⁵⁾등에서는 교육의무 위반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23) 「교통안전법」

제6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9의2. 제5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5)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성인지 교육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안 제23조의2제2항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사항을 근거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개정안과 같이 교통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직원

이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교육비, 인건비, 임차료 등을 감안한 추가 재정소요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총 64억 2,100만원으로 연평균 12억 8,400만원으로 추계됨.²⁶⁾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동 개정안을 수정하여 의결함

2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42)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2021.12.29.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관련 위원회 의견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11.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개정안은 교통행정기관(지정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통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양질의 대국민 교통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교통안전공단, 일부 시·도 지역별 교통연수원에서 분산하여 시행되고 있음.

다만, 개정안은 해당 개정규정을 제4장(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²⁷⁾에 신설하고 있는데, 내용 상 관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 제4장은 교통시설의 정비(제22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제23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제24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제25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제26조), 교통시설의 유지(제27조) 등 국가에게 교통안전·교통수단·교통시설 등과 관련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반면, 개정안 제23조의2는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제한단속원에게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면서 교육대상, 교육 면제, 교육 위탁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해당 내용은 국가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수단에 해당함.

따라서, 개정규정이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²⁸⁾을 규정한 제5장에 위

27) 제4장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시책

- 제22조 교통시설의 정비 등
- 제23조 교통안전지식의 보급 등
- 제24조 교통수단의 안전운행 등의 확보
- 제25조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 제26조 교통수단의 안전성 향상
- 제27조 교통시설의 유지
- 제28조 위험물의 안전운송
- 제29조 긴급 시의 구조체제의 정비 등
- 제30조 손해배상의 적정화
- 제31조 과학기술의 진흥 등
- 제32조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 강구 상의 배려

치하도록 조 번호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안 제23조의2에 대한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수정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정 성 희)

28) 제5장 교통안전에 관한 세부시책

제33조 교통수단안전점검	제50조 교통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등의 교통사고 원인조사
제33조의2 교통안전 특별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51조 교통사고관련자료 등의 보관·관리
제34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제52조 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35조	제53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득 등
제35조의2 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53조의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6조	제54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의 취소 등
제37조 교통시설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54조의2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제38조 교통시설안전진단지침	제55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39조 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55조의2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제40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55조의3 운행기록장치 등의 장착 여부에 관한 조사
제41조 결격사유	제56조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의 설치 등
제42조 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56조의2 중대 교통사고자에 대한 교육실시
제43조 등록의 취소 등	=====
제44조 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57조 교통문화지수의 조사 및 활용
제45조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57조의2 교통안전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46조 교통시설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57조의3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제47조 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제48조 교통안전사업에의 투자 등	
제49조 교통사고의 조사 등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3. 2.

제안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가. 지정행정기관은 교통행정기관에 해당되므로 지정행정기관의 공무원
원을 교육 대상에서 삭제함.
- 나.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을 교육 대상에 포함함.
- 다.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함.
- 라.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마.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설></u>	<u>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등의 실시)</u> ① 지정행정기관 및 교통행정기관, 교통시설설치·관리자 등은 교통안전 지식 보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이 제23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u>제23조의2(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u>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통행정기관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u>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u>④ 교통안전 전문 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u>
--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
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
- 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6조의3(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u> <u>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u> <u>2.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직원</u> <u>3.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u> <u>②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u>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u>

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통안전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교육 면제, 그 밖에 교
통안전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